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에콰도르, 한국산 파종용 고추 종자를 수입 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식물 위생 요건 발표



수입통관

이슈 바로가기 ▶

- 에콰도르 동식물관리규제청(AGROCALIDAD)은 2023년 7월 한국과 검역 협상을 마치고, 「법령 0165(RESOLUCIÓN 0165)」를 통해 한국산 파종용 고추 종자(Capsicum annum)를 수입하기 위한 필수 식물 위생 요건을 규정함
- 주요 내용

| 구분 | 수출 요건 |
|----|---|
| 1 | 에콰도르 동식물관리규제청 (AGROCALIDAD)이 발급한 수입허가서 |
| 2 | 처음 사용하는 새 포장에 담겨야 하며 흙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함 |
| 3 |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1) Xanthomonas euvesicatoria, Xanthomonas vesicatoria 및 Pepper mild mottle virus (PMMV-S)에 대한 실험실 정밀 검사를 통한 화물 무감염 증명 2) 병원체 10종*에 대한 선적 전 소독 처리 - 플루디옥소닐 2.5%(Fludioxonil 2.5%) + 메탈락살-M 1%-FS (Metalaxyl-M 1% - FS)을 사용하여 2mL/kg 용량 또는 유사한 작용을 하는 다른 제품을 사용해 소독 처리 |

(* 병원체 10종: Albifimbria verrucaria, Cladosporium cucumerinum, Cladosporium oxysporum, Colletotrichum capsica, Colletotrichum coccodes, Colletotrichum dematium, Fusarium concentricum, Fusarium lactis, Destructive Phoma, Stemphylium solani)

(* 시행일: 2023년 7월 12일)

출처: Gobierno del Ecuador, RESOLUCIÓN 0165 EL DIRECTOR EJECUTIVO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FITO Y ZOOSANITARIO

캐나다, 밀가루와 빵류 제품에 새로운 원료에서 유래한 '리파아제'의 사용 허용

-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빵, 밀가루 및 통밀가루, 비표준화된 제빵 제품에 Saccharomyces cerevisiae LALL-LI에서 유래한 리파아제(lipase)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허용된 식품 효소 목록」을 개정하여 해당 품목의 식품 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 허용 품목: Saccharomyces cerevisiae LALL-LI에서 유래된 리파아제
 - 사용 허용 대상 식품: 빵, 밀가루 통밀가루, 비표준화된 제빵 제품*
 (* 비표준화된 제빵 제품(Unstandardized bakery products)은 캐나다의 식품 및 의약품 규정(Food and Drug Regulation)과 캐나다 식품안전규정(Safe for Canada. Regulations)에서 정의한 제빵 제품의 식품 식별 표준(Standards of identity) 요건을 벗어난 제품임
 - 사용 조건: 우수 제조 관행(GMP)**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 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 시행일: 2023년 9월 13일부터 적용



SPS

이슈 바로가기 ▶

출처: Government of Canada, Notice of modification to the List of Permitted Food Enzymes to enable the use of lipase from saccharomyces cerevisiae LALL-LI in bread, flour, whole wheat flour and unstandardized bakery products, 2023.09.13

호주 뉴질랜드, 한국 식품 수출 시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 주의



TBT

이슈 바로가기 ▶

- 호주와 뉴질랜드로 식품 수출 시 2021년 2월 25일 강화된 식품기준코드(ANZFSC)의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을 반영하여, 한국 식품 문제사례를 중심으로 주의해야 하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을 정리하여 공고함
 - 주요 내용(개정된 알레르기 표시 기준의 주요 내용)
-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필수 표시 항목: 땅콩, 견과류, 우유, 달걀, 깨, 어류, 갑각류, 대두, 루핀 콩, 밀과 글루텐 함유 곡물, 아황산염(10mg/kg 이상)
 -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 시 주의사항
 -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라벨에 표시할 경우, 식품기준코드(ANZFSC) 표9-3에 규정된 필수 표기 사항(Mandatory declarations)에 따라 지정된 성분 명칭(영문명)을 사용해야 함
 -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다른 식품 성분명보다 작지 않은 크기의 굵은 글씨로 표기해야 함
 - 식품 성분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되었다는 별도 설명 문구를 작성할 경우 '포함(contains)'을 사용하여 해당 성분명 바로 옆에 작성해야 함
 - 시행 일정: 2024년 2월 25일까지 전환 기간 적용,
 전환 기간 만료 이전에 포장 및 라벨링된 제품은 2026년 2월 25일까지 사용 가능

출처: FSANZ, Allergen labelling(2022.07 업데이트)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미국, 한국 수출 식품이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TBT

이슈 바로가기

- 2023년 1월~ 6월까지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 식품 중 미국에서 통관이 거부된 96건의 문제사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총 55건의 복합적인 식품 라벨링 문제가 확인됨
- 이에 한국 수출 식품의 라벨링 문제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으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미국의 식품 표시 기준을 종합하여 공고함
- 주요 내용
 - 1) 대상 품목: 빵, 곡물, 통조림 식품 또는 냉동 식품, 과자, 디저트, 음료 등 사전 포장식품
 - 2) 미국으로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라벨링 기준
 - ① 식품 라벨의 필수 표기 정보: 제품명, 순 중량, 영양 정보, 성분 정보(원재료/식품 첨가물/알레르겐 정보), 제조업체와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 원산지
 - ② 식품 라벨 표기 시 주의해야 하는 표시 기준(한국 수출 식품 문제사례 관련)
 - 모든 라벨링과 포장은 유익하고 명확해야 하며, 라벨 정보는 영어 또는 미국 영토 내 주요 언어(푸에르토리코의 스페인어 등)로 표시되어야 함
 -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모든 단어, 문장 및 기타 정보는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서술되어야 함
 - 식품 라벨에는 식품의 통칭 혹은 관용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 보충 영양소를 함유한 식품은 영양소 강조표시(Nutrient Content Claims)와 건강 강조표시(Health Claims)에 FDA에서 표기를 허용하는 영양소의 종류, 용어, 문구 등의 기준을 확인하여 허용된 용어와 문구를 표기해야 함
 - 식이 보충제(Dietary supplement)의 경우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라벨에 "식이 보충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함

출처: FDA, 산업 이해관계자를 위한 지침: 식품 라벨링 지침(Guidance for Industry: A Food Labeling Guide)

미국, 식이 보충제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 미국은 세계 건강 기능 식품 시장 점유율 1위 국가로, 미국으로 건강 기능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미국의 식품 라벨 표기 기준 뿐만 아니라 식이 보충제의 라벨 표기 기준에 주의하여 식품 수출을 준비해야 함
- 주요 내용(식이 보충제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라벨링 기준)
 - 1) 식이 보충제 라벨의 필수 표기 정보
 - "식이 보충제", 또는 "철분 보충제"와 "허브 보충제"같이 식이 보충 성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식이 보충제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해야 함
 - 순 중량 및 제품의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는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미국 내 사업장 주소를 표기해야 하며, 수입 제품의 경우 원재료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
 - 식이 보충제의 모든 성분은 「보충 성분 정보(Supplement Facts)」 또는 「기타 성분(other ingredients)」 목록에 표기해야 함
 - 「보충 성분 정보」는 1회 제공량과 용기당 1회 제공량, 그리고 식이 보충 성분의 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기타 성분」 목록에는 식이 보충 성분의 출처, 식품 색소 및 식품 첨가물 등을 표기해야 함
 - 2) 식이 보충제 라벨의 강조표시(claims) 표기 기준



TBT

이슈 바로가기

| 구분 | 의미 | 표기 기준 |
|--------------|--|---|
| 건강 강조표시 | 건강 강조표시는 성분과 건강 상태의 관련성을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질병 예방 효과 또는 질병 위험 감소 효과를 나타내며 문구 혹은 제3자의 참고 의견, 기호, 삽화 등으로 표기함 |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전에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함 |
| 구조 및 기능 강조표시 | 구조 및 기능 강조표시는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성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영양 결핍 관련 효능, 영양소 또는 식이 성분 섭취를 통한 일반적인 웰빙(well-being)의 효능을 설명함 | 구조 및 기능 강조표시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규정에 따라 해당 문구가 진실되고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품을 처음 판매한 후 30일 이내 사용한 표시 문구를 FDA에 통지해야 함 |
|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는 '무함유(free)', '고함량(high)' 또는 '더 많은(more)', '줄어든(reduced)' 등의 표현으로 식이 보충제에 함유된 영양 성분의 함유 수준을 강조하는 문구를 의미함 |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는 규정된 문구만 사용할 수 있음 |

출처: FDA, 식이 보충제의 라벨링 지침(Dietary Supplement Labeling Guide)